

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7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11. 11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관광시설 조성에 따른 사용료 등 사용 편의성 확보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광시설 규정 신설(안 제4장)
 - 관광시설 업무 및 기능 정의
 - 관광시설 사용료 규정 추가
- 나.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단 운영 일부개정(안 제5장)
 - 홍보단 운영사항 추가
 - 홍보단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추가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 및 제139조(사용료 징수조례 등)
- 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67조(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)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[여성가족과-10351(2020. 9. 22.)]
- 라. 입법예고: 2020. 9. 21. ~ 10. 12.(21일간) / 의견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”를 “다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관광시설”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관람시설, 이용시설 등을 통틀어 말한다.

6. “홍보단”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을 통해서 온·오프라인 홍보 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에 따른 지원”을 “구청장”으로, “할”을 “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 중 “방문”을 “방문자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판매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판매수익금”을 “판매 수익금”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중 “문화관광해설사 운영”을 “관광시설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관광시설 설치 등) ① 구청장은 지역관광 육성 및 관광객과 주민들의 관광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관광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,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관광시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의3(업무 및 기능) 관광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

2.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

3. 관광브랜드 상품 및 수익형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의4(사용료)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

② 관광시설의 사용료는 제6조에 따라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또는 일부 감할 수 있다.

③ 사용료 수입은 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.

제13조 앞에 “제5장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단 운영”을 삽입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문화관광해설사 활용)”을 “(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단 활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”를 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”로, “한다)를”을 “한다) 및 홍보단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설사는”을 “해설사 및 홍보단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설사는”을 “해설사 및 홍보단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공”을 “제공 또는 홍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고려하여 차례대로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설사증”을 “별표 2에 따른 해설사증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해설사”를 “해설사 및 홍보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홍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위촉의 해제)”를 “(해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설사의 위촉을 해제할”을 “해설사 및 홍보단을 해촉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해설사”를 “해설사 및 홍보단으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경비의 지원)”을 “(지원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48조의8에 따라 예산”을 “예산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구청장은 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⑤ 홍보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취재 등에 필요한 구 소유의 관광시설 사용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8 (제231회-행정자치위제6차부록)

제18조 앞에 “제5장 관광진흥위원회”를 삭제한다.

제18조 앞에 “제6장 관광진흥위원회”를 삽입한다.

제19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2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다.

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장 1명과 관광업무”를 “관광업무 담당 국장 1명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단체”를 “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26조 중 “공무원 또는”을 “위원, 공무원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7조 앞에 “제6장 관광진흥업무를 위탁”을 삭제한다.

제27조 앞에 “제7장 관광진흥업무를 위탁”을 삽입한다.

제27조제1항제4호 중 “문화관광해설사”를 “해설사”로 한다.

제28조 앞에 “제7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28조 앞에 “제8장 보칙”을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“관광상품”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 <u>다음과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5. <u>“관광시설”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관람시설, 이용시설 등을 통틀어 말한다.</u></p> <p>6. <u>“홍보단”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을 통해서 온·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
<p>제6조(관광진흥사업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(관광진흥사업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 <u>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</u> 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관측활동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p>	<p>제9조(관측활동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외빈

4. (생략)

제10조(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) ① (생략)

②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판매수익금은 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.

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방문자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판매 수익금 -----

-----.

제4장 관광시설

제12조의2(관광시설 설치 등) ① 구 청장은 지역관광 육성 및 관광객과 주민들의 관광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관광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,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관광시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의3(업무 및 기능) 관광시

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
- 2.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
- 3. 관광브랜드 상품 및 수익형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 설>

제12조의4(사용료)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,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

② 관광시설의 사용료는 제6조에 따라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또는 일부 감할 수 있다.

③ 사용료 수입은 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.

제5장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단 운영

<신 설>

제13조(문화관광해설사 활용) ① 구청장은 구민,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

제13조(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단 활용) ① -----

위하여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(이하 “해설사”라 한다)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.

제14조(임무 등) ①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해설사는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구의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 서비스 제공

2. 3. (생략)

② 구청장은 해설사를 관광객 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 및 태도,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차례대로 배치한다.

③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해설사증을 달아야 하며,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인원 및 자격 등) ① 해설사의 인원 및 자격은 구청장이 정한다.

② 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제16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

--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-----

-- 한다) 및 홍보단을 -----
-.

② ----- 해설사 및 홍보단 은 -----.

제14조(임무 등) ① -----
---- 해설사 및 홍보단은 -----
-----.

1. -----

----- 제공 또는 홍보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고려하여 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별표 2에 따른 해설 사증-----

-----.

제15조(인원 및 자격 등) ① 해설사 및 홍보단 -----.

② 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홍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시 위촉할 수 있다.

제16조(위촉의 해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그 밖의 사유로 해설사로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

제17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5장 관광진흥위원회

<신 설>

제1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제16조(해촉) -----

---- 해설사 및 홍보단을 해촉할 -----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 해설사 및 홍보단 -----

제17조(지원사항) ① -----

----- 예산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구청장은 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⑤ 홍보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취재 등에 필요한 구 소유의 관광시설 사용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6장 관광진흥위원회

제19조(기능) -----

-----.

1. ~ 4. (생략)

5. 캐릭터상품 사용승인 심의 등에 관한 사항

6. (생략)

제20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구의 국장 1명과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학계, 언론계, 법조계,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
2. 3. (생략)

④ (생략)

제26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6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구성 등) ① -----

--.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 관광업무 담당 국장 1명과 ---

-----.

1. -----

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수당 등) -----

----- 위원, 공무원 또는 -----
-----.

【별표 2】 문화관광해설사 등록증(제5장 제14조제3항 임무 등 관련)



「지방자치법」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「관광진흥법」

제67조(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)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,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,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정에 따른 중복 조문 삭제 및 관광시설 설치, 업무 및 기능 정의와 관광시설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- 소 속: 문화관광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이 름: 노현정
- 연락처: (052)290-3695